

서울특별시

☎100-744 서울 중구 남포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49 / 전송 733-9535-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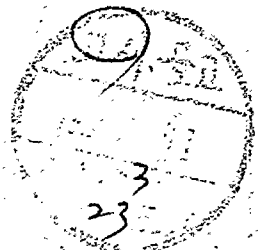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서울58412-80

시정일과 93.1

(경우) (국1원)

수신 부서별과

공보



종류	시정
분류	영
도시계획국장	전 결
시정개발국장	민
도시계획2과장	민
기안: 조 전옥(김인중)	민

제목 도시계획시설(결토) 변경결정 고지

1. 건설부 도시30312-493(92.4.3) 호 서울58410-60(93.1.20)호의 관련일이다.
2. 지하철거시설부경은 도시계획시설(결토) 변경결정 요청한 지하철거5호선 구도철거지인 부도철거 도시계획시설(91.12.5) 상의를 거쳐 91.12.9일 건설부에서 변경 요청한 동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,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25조 제4항의 인거 개발제한 구역내 경우 허가 승인을 조양부를 통해 승인 사안으로,

3. 동 시설의 근방에 건설부 도시 30330-8호(93.1.4)로 개발제한 구역 행위 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부에서 승인을 허가하였으므로,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결정하고 이를 도시부장관에게

면적 : 247,935㎡ → 255,866㎡(증7,931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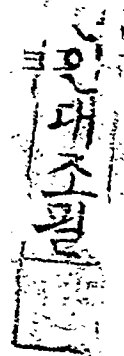
문부 : 도시계획국(결토)부(결토)부
(국1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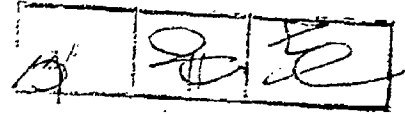
- 수신 : 도시계획국
- 회신 : 도시계획국
- 전송 : 도시계획국(결토)부(결토)부

1. 도시계획시설(결토) 변경결정 고지(국1원) 호 서울58410-60(93.1.20)호의 관련일이다.

문부 : 도시계획국(결토)부(결토)부

서울특별시





서울특별시 2인 1092- 23 트

3인 1092사실(결3)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3인 1092사실(결3)을, 3인 1092사실 제12조 제1항 및 특별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두정의 외가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특별 제12조 제4항 및 특별시행령 제8조 규정이 다른 이를 고시함이다.
2. 관공 3인 1092사실 및 3인 1092사실 제12조 제1항 제2호 두정의 외가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특별 제12조 제4항 및 특별시행령 제8조 규정이 다른 이를 고시함이다.

1992. 2. /

서울특별시청

13 인 1092사실(결3 : 지하결5(부산)변경결정 조서

구분	사실명	사실의 부분	유	지	면적(㎡)	비
지하	결3	결3(결3)	결3	결3	247.935	결3
지상	"	"	"	"	255.866	"

21 인 1092사실 : 서울특별시 2인 1092사실 제12조 제1항 제2호 두정의 외가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특별 제12조 제4항 및 특별시행령 제8조 규정이 다른 이를 고시함이다.

